

# 『한국HRD연구』 간행 규정

최종 개정 2017. 07. 1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대학교 한국인적자원개발전략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함) 규정 제4조 제4항에 규정된 본 연구소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본 연구소의 학술지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술지 명칭)** 본 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의 국문명은 ‘한국HRD연구’로 하며, 영문명은 ‘Journal of Korean HRD Research’로 한다.

**제3조(편집위원회)** 학술지의 편집 및 발간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술지 편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둔다.

**제4조(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연구소 규정 제10조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추천하여 연구소장이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단, 편집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교외 인사를 2인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연구 및 저술실적, 연구소 활동의 전문성, 적극성 등을 고려하여 임명한다.

**제5조(위원회의 임무)** 편집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논문심사규정의 개폐
2. 논문심사위원 선정 및 위촉
3. 게재여부의 최종 판정
4. 편집체제 및 양식에 관한 사항
5. 표지의 색, 디자인에 관한 사항
6. 논문 게재료, 심사료, 분량 초과 논문에 대한 초과비용 책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심사 및 편집에 관련되는 사항

**제6조(게재논문의 요건)** 본 학술지는 연구소 규정 제4조에 제시된 사업 취지에 적합한 인적자원개발(HRD) 연구의 성과로 독창성이 인정되는 논문을 게재한다.

**제7조(발간횟수와 시기)** 본 학술지는 연 4회(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발행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게재논문 종류)** 본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은 일정한 주제에 대하여 위원회가 청탁하는 특별논문과 회원 개인이 제출하는 일반논문으로 구분한다. 단, 일반논문은 위원회에서 관장하는 소정의 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제9조(투고 자격)**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본 연구소 상임연구원 및 비상임연구원.
2. 박사학위 소지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또는 재·휴학생.
3. 석사학위 소지자,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또는 재·휴학생은 지도교수와 공동으로 게재가능하며, 기 게재 이후에는 단독으로 게재가능.

**제10조(투고 방법)**

1. 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회원은 본 연구소의 원고 작성 세칙 및 투고 요령에 따라 원고를 제출해야 한다.
2. 논문의 주제는 인적자원개발(HRD)과 관련 분야로 하며 분량은 원칙적으로 20쪽(연구소 학술지 편집양식 기준)이내로 한다.
3. 원고에는 반드시 1쪽 이내의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을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투고한 원고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4. 원고교정이 완료된 논문 원고를 연구소 홈페이지(<http://hrdresearch.cau.ac.kr>) 투고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제11조(논문의 심사)** 논문의 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수행된다.

1. 논문의 심사는 1차 심사와 2차 심사의 절차로 진행된다.
2. 1차 심사는 편집위원을 중심으로 실시하며, 인적자원개발(HRD) 영역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일반적 주제를 우선하여 심사한다. 투고 논문의 주제가 인적자원개발(HRD)영역에서 지나치게 벗어난다고 판단될 경우 편집위원 재적 2/3 이상의 찬성으로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2차 심사는 매 논문마다 3인의 심사위원으로 실시하며, 제출논문의 주제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해당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학자를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다.
4. 위원회는 제출된 논문의 내용에 대한 첨삭을 집필자에게 제시 또는 협의할 수 있다.

**제12조(심사 규정)** 심사기준 및 심사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3조(논문접수 마감일)** 원고접수는 수시로 하고, 당해 호 발간 대상논문의 접수 마감일은 발간 예정일로부터 45일 전으로 한다.

**제14조(심사료와 게재료)** 논문의 투고 및 게재를 원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심사료와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임·비상임 연구원을 제외한 응모자(공동응모자 포함)는 응모시 100,000원의 심사료를 납부해야 한다.
2. 이전 권호의 논문 심사에서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후 재투고하였을 경우에도 100,000원의 심사료를 납부해야 한다.
3. 논문의 기본 게재료는 200,000원이며,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의 경우(논문에 “~로부터 지원받았음”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경우) 400,000원의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4. 학술지의 인쇄된 쪽수로 20쪽이 넘을 경우에는 쪽당 20,000원의 추가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5. 상임 또는 비상임 연구원과 기타 연구자의 공동연구일 경우 기타 연구자의 몫으로 해당 비율의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15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